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11호 2019. 11. 4.(월)

고 시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2

공 고

-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-- 4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고시 제2019-193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4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	불 임	참 조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3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(조서)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123	2019.11.04	건물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 27-1	2019.11.04	건물멸실
3	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62번길 25	2019.11.04	건물멸실
4	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63번길 28	2019.11.04	건물멸실
5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57번길 15	2019.11.04	건물멸실
6	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59번길 15	2019.11.04	건물멸실

목포시 공고 제2019-1512호

「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「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4일

목 포 시 장

1. 자치법규명

-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- 「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중 “심의 대상”에 심의제외 사업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심의 대상)에 제외사업 규정

4. 입법예고 : 2019. 11. 4. ~ 11. 25.(21일간)

5. 제정 조례(안) : 별첨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(감사실) : 해당없음

- 규제심사 대상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여성가족과) : 검토완료

7. 의견제출

- 제출 기한 : 2019년 11월 25일까지(21일간)
- 제출 방법 : 우편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- 의견 제출시 기재내용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 등
- 보내실 곳 : 목포시청 기획예산과
 - 주소: (우)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(목포시청)
 - 전화: (061)270-3426, 팩스: (061)270-3578
 - 직접방문

8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(☎270-34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목포시 조례 제 호

「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

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심의대상)①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술용역 :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
2. 종합기술용역 :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
3. 공사설계용역 :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
2.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
3. 사업비의 전액이 국·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
4.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, 보수, 일부 보완 등의 단순용역
5.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